

2026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인문계열

| 지원학과(부) | 성 명 | 생년월일 (예: 050512) | | | | | | 수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 |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7 |
| |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 |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9 |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 작성은 검은색 볼펜(연필 사용 불가)으로만 가능합니다.
3. 답안의 정해진 작성 분량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영역에 작성한 내용만 인정됩니다.
4.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알릴 수 있는 표현 및 표시를 하면 안됩니다.
5.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문항 및 제시문

가

소송제도는 개인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절차에 관한 제도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소송제도는 제도적 이상(理想)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과오 없는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재판’이다. 특히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제도에서는, 과오 없는 재판을 통해 적정성과 공평성을 달성하려고 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통해 신속성과 저비용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 중에서 경제적인 재판에 주목한다면, 오판비용(error cost)과 소송제도운영비용(operating cost)의 합인 소송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판비용이란, 법원이 완전정보가 아닌 불완전정보에 기초하여 판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소송제도운영비용이란,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재판비용, 당사자가 부담하는 서류작성비용 및 변호사 보수, 판사의 인건비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판결은 완전한 실체적 진실과 완벽한 법률지식에 기초한 완전정보판결과 일정 부분 괴리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원은 완전정보판결을 추구하며 이 괴리를 좁히는 것은 오판비용을 감소하게 하므로 바람직하다. 다만 오판비용이 줄어드는 데에는 제도운영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손해에 대한 기회비용*이 100만원인데, 가해자가 그 손해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회피비용이 90만원이라고 하자. 만일 법원이 완전정보판결을 내리고 있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발생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10만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일 유형의 사건에서 평균 15%에 해당하는 불완전정보판결이 나타난다고 하자. 즉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는 판결의 비율이 15%라고 하면, 가해자는 손해발생을 회피할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손해의 기회비용이 85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판이 없는 경우와 달리 오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때 오판확률을 10%미만으로 줄이는데 제도운영비용이 5만원 소요된다고 하면, 그 5만원을 들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이렇게 하여야 오판비용과 소송제도운영비용의 합인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가 항상 피해자의 최적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기회비용: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가치들 중 가장 큰 가치.

나

분쟁이 소송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 없이 당사자 간의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각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며 법관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주장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즉 누군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누군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반면에 조정은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제3의 대안에 합의해 가는 과정이다. 보통 제3자인 조정인이 대안을 제시하면 분쟁의 당사자들은 그 대안을 수용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조정인은 합의를 강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쟁해결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소송보다는 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각 당사자로서의 개인이나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긍정적 효과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조정이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해 지출되는 당사자들 사이의 비용은 물론 사회적인 소모적 비용 역시 대폭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정이 갖는 효용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기도 한다. 첫째,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절차의 비밀을 보장함에 따라 신뢰구축이

가능하다. 셋째,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언하고 소통할 수 있다. 넷째,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하다. 다섯째,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새롭게 도출해낼 수 있다. 여섯째, 합의의 결과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

조정을 일종의 거래 또는 흥정관계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도 가능하다. 즉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100이라고 가정하면, 조정은 그러한 원고의 권리를 피고에게 파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때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자신의 권리에 관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피고가 그 권리에 대해 같거나 높게 평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그 권리를 100 이상으로 평가하면 거래는 성사된다.

그런데 만일 원고가 절대적으로 100 이상을 원한다면 그는 소송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100 이하에서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조정의 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다. 가령 원고가 자신이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확률을 70%로 평가한다면 100 중에서 70만큼이 원고의 기대이익이 된다.

한편, 피고의 입장에서 그가 원고로부터 권리를 매수한다는 의미는 원고의 소 제기를 막고 조정절차를 선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으로 이행됨에 따른 기대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기대이익이 피고의 기대손실보다 작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조정을 선택할 유인은 결국 승소확률에 의존한다. 하지만 원고가 생각하는 승소확률과 피고가 생각하는 원고의 승소확률이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만일 원고나 피고가 자신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는 경우 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즉 분쟁당사자들의 낙관적인 기대에 따라 조정보다 소송의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비관적인 기대에 따르면 조정의 가능성이 커진다. 양 당사자가 상대적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가질수록 조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 기대는 각 분쟁당사자 개인이 가진 정보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라

규범적 논증은 어떠한 법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만일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바람직함의 판단기준”이 확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실증적 분석이 있다고 하자. 여기서 바로 “무과실책임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규범명제가 도출될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규범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 목적이려면”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경제학은 경제학이기 때문에 효율(efficiency)을 그 잣대로 사용한다. 효율이란 그 사회의 부(富)의 전체 크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정확하다. 그 부(富)를 누가 얼마나 가지는지, 즉 분배(distribution)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경제학의 관심사가 아니다. 법경제학에서 어떠한 상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때에는 항상 그 앞에 “분배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라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갑(甲)이 수고를 하면 100원, 을(乙)이 수고를 하면 300원이 든다고 하자. 여기서 100원 또는 300원은 수고나 노력에 수반되는 고통을 평가한 금액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소멸되는 자원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법경제학은 법제도가 갑(甲)이 수고를 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을(乙)이 수고를

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200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갑(甲) 또는 을(乙)의 부(富)가 달라지지만, 법경제학은 이 문제가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무과실책임:**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없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문제 1》

제시문<나>의 입장에서 제시문<가>를 활용하여 제시문<다>의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800~1,000자)

《문제 2》

제시문<가>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해 보자.

- 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기회비용=100만원
- ② 가해자의 회피비용은=150만원
- ③ 불완전정보판결 확률=0%, 제도운용비용=200만원
 불완전정보판결 확률=5%, 제도운용비용=190만원
 불완전정보판결 확률=10%, 제도운용비용=180만원
 ⋮
 불완전정보판결 확률=100%, 제도운용비용=0만원

제시문<가>의 ㉠의 관점에 따르면 위 예시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서술하고, 제시문<라>의 관점에서 ㉠이 지닌 문제점(한계)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1,000자)

2. 출제 의도

- ① 이번 모의논술고사 문제는 종래 문제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출제하였으며, 고등학교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등의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 과제 해결에 응용함으로써, 논리구조의 파악 및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과 합리적 논증 역량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동시에 그와 같은 역량을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고자 하였음.
- ② 각 제시문과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의 인문·사회적 소양 및 일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부 제시문에서는 예시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그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수치를 통한 계량적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 더욱 명확한 논증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음.
- ③ 사회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우리 사회는 그러한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 또는 재판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역시 존재함. 사회적 관점에서 소송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개인적 관점에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지, 각각의 요소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분쟁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바, 각 제시문은 경제적인 재판, 당사자의 자율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조정, 조정을 선택할 유인, 바람직함의 판단기준과 사회적 후생 등을 다양한 차원에서 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응시자가 이러한 제시문들의 논지와 관계를 적절히 파악하고, 사회적 효율성 차원에서의 접근과 효율성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한계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3. 제시문 출처 및 관련 교과서

제시문<가>

| | |
|--------|---|
| 출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세일 외 6인, 『법경제학』 (pp.685-689), 박영사 |
| 관련 교과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필운 외(2015), 『고등학교 정치와 법』 (pp.120-126), 비상교육 • 정필운 외(2015), 『고등학교 정치와 법』 (pp.120-126), 비상교육 • 김왕근 외(2015), 『고등학교 정치와 법』 (pp.127-130), 천재교육 • 유종열 외(2015), 『고등학교 경제』 (pp.17-24, 74-78), 비상교육 • 박형준 외(2015), 『고등학교 경제』 (pp.19, 22-25), 천재교육 |

제시문<나>

| | |
|----|---|
| 출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세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경제학적 분석”,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2020, pp.206-207. |
|----|---|

제시문<다>

| | |
|--------|---|
| 출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세일 외 6인, 『법경제학』 (pp. 698-700), 박영사 • 오정일/송평근, 『법경제학입문』 (pp. 153-160), 박영사 |
| 관련 교과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종열 외(2015), 『고등학교 경제』 (pp.17-24, 74-78), 비상교육 • 박형준 외(2015), 『고등학교 경제』 (pp.26-29), 천재교육 |

제시문 <라>

| | |
|--------|---|
| 출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옥렬,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법학 제55권 3호, 2014, pp. 1-30. |
| 관련 교과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종열 외(2015), 『고등학교 경제』 (pp.17-24, 74-78), 비상교육 • 박형준 외(2015), 『고등학교 경제』 (pp.26-29), 천재교육 |

4. 제시문 해설

- ④ 제시문<가>는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소송제도의 제도적 이상을 두 가지로 나누고, 그 중에서 ‘경제적인 재판’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경제적인 재판이란 저렴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회적 비용은 오판비용과 제도운용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때 오판비용과 제도 운용비용은 반비례관계에 있다. 오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용에 비용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문<가>에서는 마지막 문단에서 오판비용과 제도운용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 언제 경제적인 재판이 가능하게 되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항상 피해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 ④ 제시문<나>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조정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조정이 당사자 자율에 의하여, 양보와 타협이라는 과정을 거쳐 분쟁의 해결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두 번째 문단에서는 소송에 비하여 조정이 가지는 강점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 ④ 제시문<다>는 분쟁의 당사자가 소송과 조정이라는 두 가지 절차 중에서 언제 조정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분쟁당사자의 관계를 거래관계로 전제하고, 원고의 기대이득과 피고의 기대손실을 비교할 때 전자가 후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조정이 가능함을 설명한다. 그런데 원고의 기대이득과 피고의 기대손실의 비교는 승소확률에 의존한다. 제시문<다>는 일반적으로 이 승소확률에 대한 각 당사자의 낙관적인 기대수준이 낮아질수록 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게 될수록 상대적 낙관주의로부터 벗어나 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커진다고 한다.
- ④ 제시문<라>는 법경제학의 관심사가 효율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법경제학에서 어떠한 사회적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을 전제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주체가 투입하는 비용을 예시로 들어, 사회적 후생극대화의 관점은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5. 문항 해설

《문제 1》

본 문제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조정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어떠한 방안들이 조정을 선택할 유인으로 이어지는지 논술하도록 요구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서술이 필요하다.

첫째, 제시문<나>의 입장에서 논술하여야 하므로,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을 취하여야 한다.

둘째, 제시문<가>에서는 언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어 경제적인 재판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에 유추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즉 각각의 분쟁당사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제도를 운용하여야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논증하여야 한다. 대안으로, 소송보다 조정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논증도 가능하다.

셋째, 제시문<다>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조정을 선택할 유인(ⓐ)은 각 당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가지는 경우 증가한다. 따라서 답안에서는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승소확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의 마련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승소확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제도적 수단을 그것에 연결시킨다면 어떤 수단을 제시하더라도 무방함. 즉 제시하는 수단 자체의 적절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음.

《문제 2》

본 문제는 법경제학적 효율성이 모든 분쟁을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논술하도록 요구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서술이 필요하다.

첫째, 제시문<가>의 경제적인 재판(㉠) 및 그것을 설명하는 예시와 <문제 2>에서 주어진 변형된 예시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서술하여야 한다. 제시문<가>의 예시는 피해자의 기회비용이 가해자의 회피비용보다 높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문제 2>의 예시는 가해자의 회피비용이 피해자의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다음의 서술로 이어나갈 수 있다.

둘째, <문제 2>의 예시에 대하여 경제적인 재판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되지만 가해자가 사고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점을 논증하여야 한다.

셋째, 제시문<라>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더라도 이익(부)가 적절히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므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 2> 예시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비판하여야 한다. 또한, 바람직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다른 판단기준도 표준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서의 적절한 분쟁 해결 및 이익분배가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채점 기준

배점기준표(인문계열)

| 문항 | 배점 | 세 부 내 용 |
|------|----|---|
| 문제 1 | 5 | • 제시문<나>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 | 20 | • 제시문<가>의 경제적인 재판을 조정에 적절히 유추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정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적절히 논증하고 있는가? |
| | 20 | • 조정을 선택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당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가? |
| | 5 |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량을 지켜서 논술했는가? |
| 문제 2 | 10 | • 제시문<가>의 예시와 <문제 2>의 변형 예시를 적절히 비교하고 있는가? |
| | 15 | • <문제 2>의 변형 예시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적절히 도출하고 있는가? |
| | 20 | • 제시문<라>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문제 2>의 변형 예시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한계점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가? |
| | 5 |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량을 지켜서 논술했는가? |

《문제 1》

1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나>의 입장을 이해하여 서술하는 부분.

둘째, 제시문<가>에서 설명하는 경제적인 재판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정에 적용하고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에 관해 서술하는 부분.

셋째, 분쟁의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지 자유롭게 제시하는 부분.

첫째 부분

- 제시문<나>의 입장에 대한 이해
-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관점

둘째 부분

- 제시문<가>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재판에 대한 이해와 설명
- 제시문<가>의 내용이 조정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주장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서술. 예를 들어, 조정에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오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등의 서술이 가능함.

셋째 부분

- 조정을 선택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전제에 관한 설명
-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승소확률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제시.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의 마련 등이 제시될 수 있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승소확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제도적 수단을 그것에 연결시킨다면 어떤 수단을 제시하더라도 무방함. 나름대로의 수단을 제시하고자 한 점에 주목하여 평가.

《문제 2》

2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가>의 경제적인 재판의 예시와 <문제 2>의 변형 예시를 비교,

둘째, <문제 2>의 변형 예시에서 나타나는 결과 도출. 예를 들어, 경제적인 재판만이 해결의 목표가 되면 가해자가 사고 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법원 역시 진위판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점 등 서술.

셋째, 제시문<라>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문제 2>의 변형 예시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비판.

첫째 부분

- 제시문<가>의 예시와 <문제 2>의 변형 예시 비교
-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서술

둘째 부분

- <문제 2>의 변형 예시에서 나타나는 결과 도출
- 가해자의 회피비용이 피해자의 기회비용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만 고려하게 되면, 가해자가 사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법원은 진위판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모든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 등을 서술

셋째 부분

- 제시문<라>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술
- <문제 2>의 변형 예시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계를 지적

<문제 1>의 세 부분 각각의 점수와 정확한 어법과 표현 점수(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1점) 및 <문제 2>의 세 부분 각각의 점수와 정확한 어법과 표현 점수(5점, 답안 수준별 점수차 1점)를 모두 합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90점 이상
- 3등급: 85점 이상
- 4등급: 75점 이상
- 5등급: 60점 이상
- 6등급: 60점 미만

※ 각 문제별로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각 문제별로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700자~799자: 5점 감점, 600자~699자: 10점 감점, 600자 미만: 6등급, 백지답안: 7등급

7. 예시 답안

《문제 1》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점에서 소송에 비해 장점이 있다. 소송제도의 이상은 크게 '과오 없는 재판'과 '경제적인 재판'으로 나뉜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그 특징상 과오 또는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정은 신속성과 경제성에 이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조정이 소송보다 유리하다. 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서는 오판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오히려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이 아닌 조정을 택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원고의 기대이익이 피고의 기대손실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원고의 기대이익 수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양 당사자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기대이익과 기대손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승소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조정을 선택할 유인을 높일 수 있다. 승소확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자신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에 의존하게 되어 조정을 배척하게 된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된다.

따라서 조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분쟁의 당사자가 자기가 가진 정보만을 기초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 낙관적 기대에 빠지기 쉬우므로, 상대방이 가진 정보를 일정한 범위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원에 정보공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격차를 줄이고 승소확률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대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조정으로 유인할 수 있다. (991자)

《문제 2》

주어진 예시의 상황에 따르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그 손해발생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지출해야 하는 회피비용보다 작다. 이 경우 잠재적 가해자는 손해발생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판결을 통하여 가해행위가 100%의 확률로 인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하는 기대사고비용

100만원은 회피비용보다 여전히 작기 때문이다. 즉, 법원의 불완전정보판단 확률의 수준에 상관없이 잠재적 가해자는 그 가해행위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가해자의 무조건적 가해행위의 선택을 고려한다면, 예시상황에서 소송의 사회적 비용-오판비용과 제도운영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법원의 불완전정보판단 확률을 가장 높은 수준인 100%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100% 확률로 부인되는 판결을 가져올 것이고, 그에 따라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온전히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예시의 상황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는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란 명목으로 피해자가 모두 감당하게 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재판'은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할 순 있지만, 이것은 재판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한다. 즉, '경제적인 재판'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규범적 논증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규범적(윤리적)인 측면에서 법제도가 추구하는 바람직함의 판단기준을 항상 충족시키진 않으며, '경제적 재판'의 지나친 강조는 자칫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의 실천과 대치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과오 없는 재판'을 통해 적정성과 공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이후 '경제적 재판'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균형감 있는 소송제도의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948자)